

번역

항소위원회는 전화 또는 사전 청문회나 공식 청문회에서 현장에서 또는 전화로 제한된 영어 사용자 및 비영어 사용자들에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판 당사자는 항소위원회의 확립된 관행 및 절차 규칙, 제8장 캘리포니아 규정집 3.3장 376.5절에 따라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연락하여 번역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규정집

8조 3.3장

376.5절: 통역가.

- (a) 공판 및 사전 공판 회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항소위원회는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사전 공판 회의 및 공판 날짜를 통지받은 시점에 통역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 (b)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 및 이해하지 못하는 당사자 또는 통역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심리 또는 사전 심리 회의 동안, 항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통역가를 제공받습니다. 통역가 요청은 통역가가 필요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항소위원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항소위원회가 요청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통역 제공 비용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통역 제공 비용은 통역가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c) 당사자의 증인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b)에 명시된 세부항목을 적용합니다. 증인을 출석한 당사자는 해당 약관에 따라 항소위원회에 통역가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 통역 제공 비용은 항소위원회가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역 제공 비용을 지불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증인을 출석하게 한 당사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 (d)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증인을 위한 언어 지원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구두 해석 또는 서면 번역과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제공이 포함됩니다.

(e) 주 인사 위원회가 발간하는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진 통역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항소위원회에 대한 공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및 절차에 관한 항소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f) 승인 목록에 있는 통역사가 공판 또는 사전 공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 언어에 대해 승인된 목록에 통역사가 없는 경우, 항소위원회는 다른 통역관에게 자격을 주어 임명할 수 있습니다.

(g) 통역사를 임명하기 전에 항소위원회 또는 당사자는 예비 통역사에 대한 간단한 추가 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역사가 공판 또는 사전 공판 회의에서 통역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항소 위원회 이전의 청문회 및 사전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용어와 절차를 영어와 다른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용어와 절차를 다른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공판 또는 사전 공판 회의 이전에 의사진행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또는 명백한 이해충돌을 항소위원회 및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통역사의 객관성을 방해하는 이해충돌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 역시 공개해야 합니다. 통역이 당사자 또는 증인과 알고 있거나 그 절차에 관계된 경우 또는 통역이 그 처리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h) 통역이 공판이나 사전 공판 회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거나, 편향, 편견 또는 편파적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특권 또는 기밀 통신을 폭로한 경우, 항소위원회는 통역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